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개방형직위(사무국장)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개방형직위(사무국장)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6. 22.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

1. 최종 합격자 명단

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(6.22.)

* 불합격에 대한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.

2.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

필수 제출서류

* 모든 서류는 최초 채용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요망

- 임용동의서 1부 ※ 반드시 자필로 작성(공고문 내 양식 활용)
-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※ 반드시 자필로 작성(공고문 내 양식 활용)
- 직원 채용신체검사서(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) 1부
- 주민등록등본 2부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기본증명서) 1부
- 반명함판 사진(3×4cm, 3개월 이내에 촬영) 2매
- 증명서류(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)의 원본 각 1부

○ 제출기한 : 2023. 6. 27.(화) 15:00까지

* 기한 내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
○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* 주소: (04637)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,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
중재원 인재개발팀

□ 임용예정일 : 2023. 7. 1.(토)

〈채용 관련 유선 문의〉

○ 인사담당자 : 02-6210-0172

○ 응대 가능시간: 평일 09시 ~ 12시, 13시 ~ 18시

임 용 동 의 서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

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,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,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된 경우, 본인의 제반 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이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2023. . .

합 격 자 : (서명)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있음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
1, 2, 3-1, 3-2(모두충족시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1호)해당여부--- 해당 비해당

1, 2, 4-1, 4-2, 4-3(모두충족시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2호)해당여부--- 해당 비해당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3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)